

[별표 7]<신설 1987.12.11>

간이수리의 범위 (제37조 관련)

○ 계량기의 기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수리

1. 길이계에 있어서의 간이수리

택시미터에 있어서 검정증인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교환 및 수리

2. 저울에 있어서의 간이수리

가. 봉인이 있는 저울은 봉인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교환 및 수리

나. 수동저울의 영점조정자·중심자·휴식장치·인자장치·수평기·고정자치·접시·판·접시걸이·충격방지장치·피계량물 계량용용기·저울의 이동(토지·건물에 부착된 것) 및 계량물 운반장치의 교환 및 수리

다. 스프링식 접시지시저울의 영점조정자·수평기·지침 또는 조절나사의 교환 및 수리

라. 전기식지시저울의 수평기·수평조정장치·수자지시램프·지시부의 외판 및 유리·퓨우즈 및 스위치의 교환 및 수리

3. 부피계에 있어서의 간이수리

가. 가스미터에 있어서 검정증인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외부의 납땜 또는 찌그러진 부분의 복원·출입구의 관 또는 금속부 및 건식미터에 있어서의 지시 기구의 덮개판의 교환 및 수리

나. 수도미터에 있어서 검정증인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스트레이너 및 뚜껑의 교환 및 수리

다. 적산식가솔린미터 및 오일미터에 있어서 검정증인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분해소재 및 공기분리기의 부착·숫자회일·리레이 또는 발신기(픽업 부분에 한함)의 교환 및 수리